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확진검사나 백신접종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안 제7조의7제6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안 제7조의7제3항제3호, 안 제4조제3항)

- 1) 난임시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 휴가(1~2일)를 부여함.
- 2) 유산·사산과 같이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44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공무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명령 제한 시간대를 확대 함.

나. 공가 허가 사유 확대 등(안 제7조6제13호 신설, 안 제7조의6, 안 제7조의6제11호)

- 1) 1급 법정감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확진 검사를 받거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2) 엄정한 공가제도 운영을 위해 일 단위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공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 3) 「검역법」 개정에 따른 현행 복무규정의 용어 변경

다. 복무실태 확인 점검대상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점검 항목에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사항을 추가함.

라.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8)

각 휴가별 사용일수의 합산이 30일을 넘으면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7. ~ 10. 2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출퇴근”을 “출퇴근, 유연근무”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시부터 오전 6시”를 “9시부터 오전 8시”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 또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이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와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제7조의7제3항제3호 중 “유산·사산”을 “조산(早産)·유산·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공무원의 경우

가. 난자 채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일 1일, 시술일 1일, 난자채취일과 시술일의 전일 또는 난자채취일과 시술일로부터 2일 이내의 날 중 2일

나. 난자 채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일 1일, 시술일 전
• 후일 중 1일

2. 남성 공무원의 경우 시술일 1일

제7조의8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휴가기간”을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u>출퇴근</u> , 당 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 검	1. ----- ----- <u>출퇴근, 유연 근무</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② (생략)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 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u>10시부터</u> <u>오전 6시까지</u> 의 시간과 토요 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 ----- ----- ----- <u>9시부터</u> <u>오전 8시</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
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 10. (생 략)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
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
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
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생 략)

<신 설>

제7조의7(특별휴가) ①·② (생

제7조의6(공가) -----

----- 기간 또는 시
간-----.

1. ~ 10. (현행과 같음)

11. -----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
리지역-----

12. (현행과 같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
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
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
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이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와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제7조의7(특별휴가) ①·② (현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③

3. ----- 조산(早
産) · 유산 · 사산-----

⑥ _____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⑦ ~ ⑬ (생 략)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

-----. <단서 삭제>

1. 여성공무원의 경우

가. 남자 채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남자 채취일 1일, 시술일 1일, 남자 채취일과 시술일의 전일 또는 남자채취일과 시술일로부터 2일 이내의 날 중 2일

나. 남자 채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일 1일, 시술일 전·후일 중 1일

2. 남성 공무원의 경우 시술일 1일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

산입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8